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5,245,786	12,457,374
일반회계	399,468,361	11,984,051
특별회계	15,777,425	473,323
기타특별회계	15,777,425	473,323
상수도	11,427,328	342,820
의료보호사업	1,975,446	59,263
묘포장	57,319	1,720
주택사업	166,606	4,998
기반조성사업	8,587	258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543,112	16,293
기초생활보장기금	923,229	27,697
주민소득지원기금	512,508	15,375
공유임야관리	163,290	4,89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39,25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